

7. '91造成用地 供給計劃

資料提供：韓國土地開發公社

공사에서는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91년도중 전체 공급택지 50,176㎡(15,178천평)의 40%에 달하는 19,835㎡(6,000천평) 개발·공급하여 200만호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공급을 1년 앞당길 계획임.

특히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임대주택이나 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공급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음.

공사는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91년에는 주거용지 19,835천㎡(6,000천평), 공업용지 8,782천㎡(2,657천평), 연구단지 1,135천㎡(343천평) 등 총 29,752천㎡(8,999천평)을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10,563천㎡(3,195천평)은 도로, 공원등 도시 기반시설용지로 지자체에 무상양여하여 도시기능 정비 및 주거생활 편의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임.

주요 사업지구별 공급대상용지는 별첨과 같음.

- ※ 첨부: 1. '91하반기 조성용지 공급계획 1부.
2. 주거 및 공업용지 분양자격 1부

I. 총괄

(단위: 천㎡, 천평)

구분	공급대상			비고
	계	유상	무상	
합계	29,752(8,999)	19,189(5,804)	10,563(3,195)	
주택용지	19,835(6,000)	12,302(3,721)	7,533(2,279)	
공장용지	8,782(2,656)	5,859(1,772)	2,923(884)	
연구용지	1,135(343)	1,028(311)	107(32)	

II. 시도별 공급내역

(단위: 천㎡)

구분	공급대상			비고
	계	주거용지	공업용지	
합계	29,752	19,835	9,917	
서울	122	122	-	
대구	994	990	4	
인천	1,948	877	1,071	
광주	768	410	348	
대전	4,473	3,338	1,135	
경기	9,685	9,598	87	
강원	2,470	706	1,764	
충북	487	487	-	
충남	249	249	-	
전북	1,828	398	1,430	
전남	2,972	227	2,745	
경북	1,567	234	1,333	
경남	1,588	1,588	-	
제주	611	611	-	

Ⅲ. 지구별 공급계획

1. 주택용지

구 분	전 체 계 획		기 공 급		합 계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합 계	54,173	37,999	23,325	15,885	12,302	7,533
서울 중 계	1,156	440	1,007	384	88	34
하 남 신 장	544	362	171	114	153	102
고 양 화 정	1,421	624	—	—	568	249
울 산 삼 호 Ⅱ	136	91	124	84	11	7
울 산 태 화	338	238	250	169	15	11
양 산 북 정	169	103	50	18	51	31
울 산 화 봉	673	391	220	101	207	120
인 천 갈 산	377	285	313	236	11	8
인 천 구 월	765	489	519	410	109	65
부 천 중 동	770	440	418	239	59	33
인 천 연 수	3,702	2,411	2,811	1,830	414	270
성 남 분 당	10,179	9,607	4,951	4,338	1,827	1,724
고 양 일 산	8,352	7,375	3,182	2,810	1,841	968
고 양 중 산	507	357	—	—	252	113
수 원 원 천	274	143	44	17	156	81
평 택 비 전 I	444	293	293	193	93	61

(단위: 천㎡)

금 회 공 급								장래계획
공 동 주 택 지			단 독 주 택 지			상업용지 및 근린용지	공공시설 용지 학교 등	
임 대	국 민	분 양	이 택	협 택	실 택			
782	2,614	2,689	916	430	858	2,839	1,174	33,127
-	29	10	-	-	-	1	48	83
-	87	16	10	-	25	15	-	366
-	297	271	-	-	-	-	-	1,228
-	-	-	-	10	-	-	1	1
-	-	9	-	-	-	4	2	131
-	-	20	5	26	-	-	-	122
-	61	-	24	122	-	-	-	416
-	-	-	-	2	-	8	1	94
31	-	-	-	1	1	41	35	151
-	-	29	-	-	-	30	-	461
-	-	-	26	-	95	119	174	788
-	172	819	162	-	16	530	128	6,946
29	416	211	300	-	-	597	288	6,926
94	63	95	-	-	-	-	-	499
-	75	51	12	-	3	13	2	119
34	34	-	-	-	12	10	3	97

구 분	전 체 계 획		기 공 급		합 계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평 택 비 전 Ⅱ	110	67	70	42	27	16
안 성 석 정	309	197	183	108	70	41
기 흥 구 갈	149	67	105	41	16	7
오 산 궤 리	151	65	130	55	3	1
용 인 수 지	574	310	—	—	307	165
안 양 평 촌	3,026	1,920	1,936	1,238	412	253
춘 천 퇴 계	372	226	90	55	201	122
속 초 청 초	139	68	39	19	45	22
속 초 조 양	277	167	—	—	85	51
삼 척 사 직	41	27	—	—	30	20
북 평 주 단	79	58	—	—	75	55
청 주 봉 명 Ⅱ	144	87	112	67	32	20
청 주 용 암	784	436	—	—	285	150
대 덕 주 단 I	399	96	325	76	39	10
대 덕 주 단 Ⅱ	844	312	278	39	266	99
대 전 둔 산 I	4,831	2,609	2,432	1,296	1,693	863
대 전 둔 산 Ⅱ	372	885	—	—	109	259
서 산 읍 내	177	107	11	7	78	47
논 산 강 산	212	163	—	—	65	51

(단위: 천㎡)

금 회 공 급								장래계획
공 동 주 택 지			단 독 주 택 지			상업용지 및 근린용지	공공시설 용지 학교 등	
임 대	국 민	분 양	이 택	협 택	실 택			
-	3	-	-	-	3	9	12	22
-	9	11	10	-	32	6	2	104
15	-	-	-	-	1	-	-	47
-	-	-	-	-	3	-	-	27
-	175	102	30	-	-	-	-	412
-	25	-	28	-	126	182	51	1,107
43	-	-	70	54	-	5	29	130
-	-	17	2	20	-	-	6	82
-	48	37	-	-	-	-	-	308
18	-	-	1	11	-	-	-	18
-	-	-	55	20	-	-	-	7
16	-	13	-	-	2	-	1	-
-	170	115	-	-	-	-	-	785
-	-	11	1	-	10	7	10	45
-	-	94	38	-	84	8	42	474
184	-	-	31	-	134	1,114	230	1,151
33	44	32	-	-	-	-	-	889
22	30	11	15	-	-	-	-	141
28	37	-	-	-	-	-	-	259

구 분	전 체 계 획		기 공 급		합 계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은 양 용 화	134	67	129	64	5	3
전 주 삼 천	496	229	426	193	69	32
군 산 나 운	489	218	—	—	70	31
김 제 요 촌	300	171	—	—	125	71
광 주 하 남	1,124	700	1,007	700	80	—
광 주 문 흥	737	409	—	—	212	118
여 천 돌 산	583	345	—	—	143	84
대 구 칠 곡 I	1,205	656	653	337	184	100
대 구 칠 곡 II	425	262	—	—	193	109
대 구 성 서	1,938	1,235	—	—	247	157
경 산 임 당	270	156	63	36	19	13
경 산 옥 산	332	177	123	24	132	70
진 해 자 은	307	204	—	—	86	58
진 해 이 동	178	98	159	96	4	2
거 제 장 평	137	80	17	10	119	70
충 무 도 남	115	67	30	14	83	48
김 해 내 외	1,337	614	—	—	455	210
서 귀 포 서 호	587	397	461	312	46	31
제 주 일 도	682	398	193	113	337	197

(단위: 천㎡)

금 회 공 급								
공 동 주 택 지			단 독 주 택 지			상업용지 및 근린용지	공공시설 용지 학교 등	장래계획
임 대	국 민	분 양	이 택	협 택	실 택			
-	-	-	-	-	1	3	1	-
-	-	-	-	4	37	9	19	5
-	-	70	-	-	-	-	-	606
32	42	31	20	-	-	-	-	275
-	-	-	-	-	-	71	9	37
120	70	22	-	-	-	-	-	816
47	57	39	-	-	-	-	-	701
-	-	56	-	7	98	23	-	587
26	104	63	-	-	-	-	-	385
-	127	102	-	-	-	-	18	2,769
-	-	19	-	-	-	-	-	295
-	30	-	10	26	50	16	-	160
-	56	30	-	-	-	-	-	367
-	-	-	-	-	4	-	-	15
10	27	14	4	28	28	2	6	1
-	18	14	3	27	13	7	1	7
-	260	195	-	-	-	-	-	1,286
-	-	-	-	14	-	3	29	134
-	48	60	59	58	80	6	26	240

2. 공장용지

구 분	전 체 계 획		기 공 급		금 회 공 급				장래계획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공장용지	지원용지	
합 계	38,743	17,629	16,101	6,479	5,859	2,923	5,455	404	26,158
인천남동공단	6,166	3,388	5,443	2,903	639	432	481	158	137
송 탄 공 단	815	281	722	281	87	0	76	11	6
동해북평공단	1,849	711	0	0	1,274	490	1,274	0	796
이 리 I 공 단	382	102	376	102	6	0	0	6	0
이 리 II 공 단	584	176	489	162	72	14	72	0	23
목포대불공단	7,342	3,969	0	0	1,785	960	1,603	182	8,566
광주하남공단	1,677	364	1,329	364	348	0	345	3	0
포철II연관단지	3,334	723	3,318	707	8	16	1	7	8
포철III연관단지	1,874	737	658	156	373	258	373	0	1,166
왜 관 공 단	1,130	698	734	342	339	319	326	13	94
경주용강공단	423	111	403	111	20	0	0	20	0
대구논공공단	2,737	1,369	2,629	1,369	4	0	0	4	104
군장산업기지	10,430	5,000	0	0	904	434	904	0	14,092

3. 연구용지

구 분	전 체 계 획		기 공 급		금 회 공 급				장래계획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공장용지	지원용지	
합 계	6,879	1,065	5,283	831	1,028	107	1,028	0	568
대덕연구단지 I	2,670	698	2,011	525	222	58	222	0	437
대덕연구단지 II	4,209	367	3,272	306	806	49	806	0	131

IV. 실수요자택지 분양자격

1. 제1순위

사업지구내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공사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2. 제2순위

사업지구의 단독택지 공급광고일을 기준하여 과거 1년간 당해지역에 거주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저축에 가입하여 18회차 이상을 납입한 자

- ① 계약고 5백만원 이상의 중장기 주택부금 가입자
- ② 월 2만원 이상의 청약저축 가입자
- ③ 월 1만원 이상의 근로자 재형저축 또는 근로자 증권저축가입자
- ④ 월 3만원 이상의 내집마련 주택부금 또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가입자

3. 제3순위: 실수요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4. 제4순위: 일반 실수요자 또는 주택건설업자

※ 분양대상자의 자격규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제2순위, 제3순위 해당자중 공급 광고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사로부터 분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실수요자 택지를 공급받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분양아파트나 조합아파트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동 순위자격을 주지 아니함.

V. 공장용지 분양자격

1. 공장용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아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2.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안의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장의 입지추천을 받아야 함.
3.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의 적용을 받은 공업단지의 공장용지는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주요령에 의함.

VI. 조성용지 공급가격 체계

구 분		수도권 및 부산권	대 도시	지 방 중소도시	비 고
공 동 주 택 지	영구임대주택지	90	80	70	
	전용 60㎡ 이하	90	90	80	
	60㎡ ~ 85㎡	100	90	80	
	85㎡ 초과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국 민 학 교 용 지	70	70	70		
이 주 자 택 지	원가 이하	원가 이하	원가 이하		
협 의 양 도 인 택 지	110	110	110		
단 독 주 택 용 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상 업 용 지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공 장 용 지	조성원가	조성원가	조성원가		

※ 특히 공동주택의 70% 이상을 임대, 국민주택지로 공급함.